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단52393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고B

변론 종결2020. 11. 5.

판결 선고2020.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70,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9.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입원과 보험계약 지급 등

- 1) 원고는 2006. 7. 31. 피고와 질병을 직접 치료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 특약이 포함된 'C' 계약을 맺었다.
- 2) 원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후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기능항진증, 심와부 통증, 두통, 어지러움 등 다양한 사유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2. 13.부터 2014. 7. 10.까지 원고로부터 70회에 걸쳐 72,590,144원을 지급받았다. 그 중 원고가 구하는 2009. 9. 2.부터 2014. 7. 10.까지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다.
- 3) 피고는 원고 외에도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과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D으로부터 2007. 2. 7.경부터 2014. 7. 14.경까지 68회에 걸쳐 합계 103,860,000원의 보험금을, E으로부터도 2007. 2. 22.경부터 2014. 7. 10.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31,018,501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나. 보험금 편취로 인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여 원고 등을 비롯한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1198, 2017고단654(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2019. 4. 25. 확정되었다.

다.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보험금의 액수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적정 입원일수의 평가를 요청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중 '적정입원일수'란 기재와 같이 적정입원 일수를 회보하였고, 위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구하는 2009. 9. 2.부터 2014. 7. 10.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43,470,1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중 '초과입원일수'란 기재 일수만큼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편취금액'란 기재의 보험금 합계 43,470,144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470,14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그런데 위 확정된 형사판결은 관련된 증거를 장기간 심리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의 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 입원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를 편취한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부당이득으로서 구하는 것이고, 위 일수 외에 추가적인 적정일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470,144원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9.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엽

별지